<특허심판원,심판편람,제12판,2017,166면>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취소결정) 후에도 심판절차를 통하여 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심판중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특허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 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당사자계 심판은 이해관계인이라면 참가신청에 의하여 증거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정정심판에서는 제3자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정정불인정이유가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직권심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아니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정심판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독립특허요건 등의 정정요건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

또한 정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심판장은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무효심판청구인이 소송단계에서 새로 제출한 무효 증거를 특허심판원에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심판편람,제12판,2017,77면>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심판의 공정을 기하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피의 신고를 심판관 스스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척 및 기피의 원인은 물론, 이에 준하는 원인으로 타인으로부터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을 들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심판관은 심판원장에게 신고(별지 3-18 서식)하여 사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결시까지의 회피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판원장은 심판정책과장에게 심판관의 지정변경을 지시한다.

<특허심판원,심판편람,제12판,2017,468면>

청구인을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고(통상실시권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자 등이 될 수 있다.

< 특허심판원,심판편람,제12판,2017,186면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개인명의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법인이 예컨데 특허권과 동종의 물품제조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등을 이유로 하여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법인으로서는 그 영업내용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영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 개인은 당해 심판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해당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권리의 보유자로서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특허심판원,심판편람,제12판,2017,1035면 >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취소결정) 후에도 심판절차를 통하여 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심판 중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특허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당사자계 심판은 이해관계인이라면 참가신청에 의하여 증거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정정심판에서는 제3자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정정불인정이유가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직권심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아니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정심판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독립특허요건 등의 정정요건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

또한 정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심판장은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무효심판청구인이 소송단계에서 새로 제출한 무효 증거를 특허심판원에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특허심판원,심판편람,제12판,2017,186면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개인명의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법인이 예컨데 특허권과 동종의 물품제조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등을 이유로 하여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그 영업내용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영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 개인은 당해 심판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해당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권리의 보유자로서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